

## 누가 혐오를 생산하는가? - 인종적 위계의 하층에 배치된 외국인들\*

양혜우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 국문초록

예멘난민 입국 이후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가 유포되었다면 이제는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를 진실처럼 가장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안전, 국민, 주권, 민족 정체성이란 이름으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혐오대상도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난민, 다문화가족까지 전 외국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혐오발언은 특정 인종적 민족적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타자에 대한 존엄과 평등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소수자가 가진 속성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의 한 형태이다. 혐오발언은 소수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효과를 가지며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하여 반론을 잃게 하는 영혼의 살인(모로오카 야스코)임을 기억해야 한다. 혐오세력은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항변하고, 타자의 개인적 속성에서 문제를 도출해 내지만 혐오의 저변에는 국가가 비국민(외국계시민)을 오랜 시간 어떻게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 왔는지 표출된 것이다. 그동안 국가는 인종적 위계를 노동시장과 가족 구조 내에 구축시켰고 신고, 단속, 추방의 억압적 국가 권력을 작동시킨 결과 인종주의와 혐오가 싹트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혐오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밝힌 시론적 연구이다.

주제어 : 외국인 혐오, 인종주의, 난민, 무임승차, 외국인 범죄, 다문화, 민족 정체성, 출입국, 단속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 1. 들어가면서: 제주예멘난민과 외국인 혐오의 발화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527명의 예멘난민의 입국은 우리사회 관용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단초였다. Wendy Brown은 관용이 주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변형 없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권력의 산물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부정의와 갈등을 탈정치화 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염과 폭력으로 얼룩진 고향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예멘난민들에 대해 환대는커녕 관용이라도 베풀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규모 11~12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세계의 참화에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해외원조의 주요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연 3조 2,003억 원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추진하고 연 1.42억 원을 인도적자금으로 원조하는 후원국으로 발전했다.<sup>1)</sup> 해외원조를 하는 이유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삶과 경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라 일컫는 시민혁명의 외침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환호하며 연대를 보낸 것처럼 아랍의 봄에 들이 닦친 흑한 서리를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과거 참혹한 전쟁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이며 실천인지를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진 한국이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응답의 하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시리아난민 28명에게 난민지위인정 심사를 거부하고 창문하나 없는 송환 대기실에 6개월 넘게 구금한 사건<sup>2)</sup>이나 527명의 제주예멘난민들을 향한 언사는 멸시와 냉대를 넘어 증오와 혐오로 가득했다. 난민 남성은 사회

1)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조정실 보도자료

2) 시리아 난민들을 포함한 150여 명의 외국인들이 인천공항 내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송환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던 사건이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었다. 이 중 시리아 출신 28명은 3개월에서 6개월 넘게 있었다. 1인용 플라스틱 의자를 이어 붙이거나 평상 위에서 잠을 잤고, 그것도 모자라 차가운 바닥에 라면 상자를 깔고 겨울을 났다. 항공사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때는 굶기도 했고 6개월간 햄버거를 먹어 소화 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청자들은 햇빛도 들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시리아 난민 28명, 창 없는 방서 5개월째 햄버거로 끼니”, (중앙일보 2016.4.25.) <<https://news.joins.com/article/19934292>>, (검색일 2019.5.1.)

적 약자로서의 지위임에도 내국인 여성의 지위를 압도하는 성별 계급성으로서의 강자성을 갖는다는 윤김지영의 주장<sup>3)</sup>은 한국인 여성에게 탐나는 피해자의 지위를 공고하게 했고, 여성 인권과 반성폭력의 수사는 이슬람 난민 남성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멘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청원에 서명했고, 기독교 보수우파세력과 여성, 일반국민이 합세한 난민반대 집회가 10차례 이상 열리고 지금도 진행형인 것은 난민문제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주목하게 함으로 한 집단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작동시키는 공포의 정치공학적 효과이다.

제주예멘난민 신청자들 중 단 2명만이 난민인정지위를 받고 412명이 인도적 지위를 받은 후 75%의 사람은 수도권 등지로 흩어졌다. 난민인권단체 등 진보적인 6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전과 강제징집 피신은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합의한 협약 이행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고 촉구한 반면, 반난민 단체들은 마땅히 추방해야 할 대상들에게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했다고 분노하며 난민문제를 넘어서 불법체류자 추방, 다문화정책 폐지, 중국동포 추방 등 모든 이주민의 권리에 반대하는 총궐기로 응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 보호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의원 사무실, 이주민 인권단체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이를 생방송으로 보내는 등 반난민·반외국인 집단의 혐오는 점점 노골적이며, 조직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4)</sup>.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혐오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9년 3월 17일 종각에서 열린 ‘제 10차 차별금지법 반대, 자국민 혐오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 행진, 집회의 분위기를 파악하였으며 집회 참석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2,3,4,5,6,7차 난민반대집회에서 발언된 기조와

3) 윤김지영, ‘난민문제에 대하여’, (페이스북 2018.6.21.),

<<https://www.facebook.com/jiyeong.yunkim/timeline?>>, (검색일 2019.5.1.)

4) ‘난민대책국민행동’은 유튜브를 통해 난민반대집회, 미등록외국인추방 집회,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앞, 도의원 사무실 앞 등의 항의 집회 현장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으며, 외국인유입 반대, 외국인의 일자리 잠식, 제주도 무사증 제도 악용 신고 촉구 등 128개의 동영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구독자는 1,700명에 이른다.

사례들을 분석했다. 집회는 난민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대상은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로 확대되었으며, 집회마다 같은 사례와 같은 내용으로 공격을 가했다. 난민반대집회 참석자들은 자신들은 혐오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외국인의 강력 범죄로 인한 불안과 공포,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 막대한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외국인 의료보험 적용으로 인한 세금 낭비, 대한민국의 이슬람화, 한반도에 위협이 발생할 시 조선족의 배반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핵심 사항은 크게 안전,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타당한 이유일까?

김종갑은 혐오는 상대방을 동물화하는 감정으로 상대를 나와 질적으로 다른 타자, 열등한 타자, 동물적 타자로 여겨 소통을 거부하고, 생각을 부재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타자에 대한 우월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는 과정으로 해석했다. 혐오는 윤리적 반응인 미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싫음에서 비롯되며, ‘왜?’라는 질문을 중지시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적 담론의 장을 봉쇄시켜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로 인한 불안과 걱정, 세금 낭비, 민족 정체성 훼손은 혐오의 원인이라기보다 혐오하기 위한 결과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혐오사회』의 저자 캐롤린 엠케는 좀 더 나아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수자 혐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단순히 실수나 궁지에 몰려 자신도 모르게 분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 해석한다. 이것이 혐오로 분출되려면 미리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고 모욕적인 언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 틀이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520명의 예멘난민으로 인해 반 외국인 정서와 외국인 혐오가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무엇일까? 누가, 무엇이 외국인의 혐오를 키우고, 혐오를 훈련하고 양성해 왔을까?

이 글은 먼저 난민반대 참석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 훼손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만일 그러한 주장이 사실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혐오를 일으키는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혐오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조장된다’는 엠케의 혐오 이론에 기대어 혐오의 주된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국동포와 결혼이주민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결혼이주민 정책이 구성해 온 인종적 위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국인을 전 한국인의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배치시킴으로 한국인의 헤게모니를 창출시킨 출입국관리법의 신고, 단속, 추방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국민과 비국민(외국계시민)을 분할하며, 열등한 타자를 구성해 내는 데 일조했음을 밝힐 것이다. 국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작동시켜 온 인종적 위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한국인의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그 순간, 뭉이 없던 외국인들이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며 인정 투쟁을 시작한 그 지점에서 혐오가 발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보완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남겨 놓았다. 먼저 혐오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개념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분석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가 일어나는 각 소주제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및 정보공개를 통한 데이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난민 정책과 난민 혐오와의 발화지점도 향후 보완해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완성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조화되고 있는 외국인 차별과 혐오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해 제도적, 구조적 메커니즘을 제시한 것은 본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할 것이다.

## II. 외국인 혐오 담론의 세 범주 : 외국인 혐오 주장의 핵심 논거 및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안전론

수많은 젊은 여성을 반 난민집회로 불러 모은 핵심 의제는 범죄, 불안,

공포였다.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는 낯선 타자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수많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질문 던지기를 거부하고 다만 불안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적 논의에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sup>5)</sup>. ‘주권자인 국민이 불안하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집회참가자들은 불안의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죄를 고발하는 사례로 대부분의 연설시간을 할애했고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외국인 특히 이슬람 난민과 불법체류자, 중국동포에게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노기 먼 여성 발언자가 조목조목 일시와 국적, 사례를 들어 외국인의 범죄를 나열하면,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 목록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미쳤다”, “안~돼”, “몰아내”를 외치며 불안과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사례들은 잔인하고 끔찍했으며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포스러운 사건들이었다. 거론된 사례들은 오원춘 사건과 같이 실제 일어난 사건들도 있었고, 근거 없이 떠도는 가짜 뉴스나<sup>6)</sup> 사건의 팩트를 왜곡한 사건들을 뒤섞어서 더 공포스럽게 각색했고 더 부풀린 것들이었다.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는 집회참가자들의 모습은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주의자라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을 소지를 막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보수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생산되는 가짜 뉴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슬람 연구자 김동문 목사는 ‘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라는 저서에서 기도를 방해한 서울대 교수 살해협박사건<sup>7)</sup>, 할랄식품단

- 5)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3월 17일 종각에서 열린 제10차 ‘차별금지법 반대, 자국민혐오집회’에 참석하여 발언, 행진, 집회분위기를 파악하였으며, 집회참석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3,4,5,6,7차 난민반대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였다.
- 6) 난민반대집회에서 한 참가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등산하고 내려온 부부를 집단 성폭행하여 아내는 자살하고 남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 정보보안과 경사는 자신이 동두천에 근무할 당시에도 이와 같은 소문으로 주민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었는데, 정착 그런 사건이 접수된 바는 없었다고 한다. 몇 년 후 창녕경찰서로 전출 가서 강력팀에 근무할 때도 주민이 얼마 전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같은 스토리의 사건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으며 불안과 공포가 어떻게 가공되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밝힌 기사가 있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사건이 집회마다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빈발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원인과 대책”, (일간 리더스 2015.4.26.),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85>> (2019.5.10)
- 7) 서울대 공대에서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하는 중에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 땅바닥

지 반대운동 전말, 무슬림 성직자 아기 살해사건<sup>8)</sup>, 무슬림 집단강간 놀이 타루하시<sup>9)</sup> 등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도 끔찍한 내용과 사진이 유통되는 이슬람괴담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며 가공된 공포의 실체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불안은 SNS 속에서 가공된 수많은 음모론의 결과로, 정보의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정보가 사실처럼 들리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속으로는 원한과 경멸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씩씩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점의 위치<sup>10)</sup>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한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공포괴담은 미움보다는 싫음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싫어한다는 견해는 ‘겁난다’, ‘무섭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공포는 특정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불안을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정치적 형태로 피해자 의식과 인종적 불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sup>11)</sup>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 얽드리면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길래 교수가 “제군들의 종교는 존중한다. 지금은 강의시간이니까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수업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그 학생들은 실험실로, 교수 핸드폰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계속 항의하며 “알라를 경배하는데 방해했기 때문에 너를 처형하겠다. 너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라며 협박하고, 대사관에 공식으로 항의하며 “기도 처소를 만들고, 교수를 처벌하라, 학생들 종교생활을 위해 학생 10명당 이맘 1명 파견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내용이다. 서울대 공대생 기도 방해사건은 국회의원 이혜훈이 여러 교회에서 이슬람바로알기라는 신앙간증을 하면서 더 공신력을 강화했다. “이혜훈 의원 이슬람 바로 알기 간증 새삼 회자”, (오마이뉴스, 2018.6.27.)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49000#cb\(2019.5.10.\)](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49000#cb(2019.5.10.))>

- 8) 이슬람 개종을 거부하는 크리스천 가정의 아기를 ISIS 성직자가 공개적으로 밧아 죽이는 장면, 그러나 거짓 조작된 뉴스이다. 그 사진은 방글라데시 북동부 잘랄라바드 지역의 주술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 9) 독일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 후 독일 언론과 세계 주요 언론들은 타하루시(Taharrush, 강간놀이)라는 중동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간문화가 유럽에 상륙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주요 행사나 축제에 다수의 남성들이 여성을 강간 추행하는 것으로 현재 여러 중동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기사에 대해 이슬람 연구자 김동문은 집단 강간놀이라고 번역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자행되지 않았으며, 슈피겔 등 언론들도 그와 같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문, 「논쟁: 이슬람 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67호, 2015, 138.
- 10) 캐롤린 엠케, 앞의 글, 52쪽.
- 11) 그레그 이스터브룩, 『비관이 만드는 공포. 낙관이 만드는 희망』, 김중수 옮김,

난민반대 집회가 가장 거셀 당시 외국인의 범죄는 늘지 않았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국내외국인체류자 수는 15.5%(33만명)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중 전체 외국인의 범죄율은 -25.6%(34,832명)로 크게 감소<sup>12)</sup>했으며 교통위반, 폭력 등의 범죄율도 줄었다. 조선족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2015~2016년에도 조선족의 범죄는 내국인의 64% 정도였다. 물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2012년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국동포’, ‘불법체류’라는 국적과 신원을 강조한 언론 보도는 중국동포나 불법체류 집단 전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라는 요구로 발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원춘 사건이후 중국동포 혐오증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댓글을 통한 추이를 분석한 박미화·김솔은 오원춘 사건 보도와 무관하게 중국동포에 대해서 항상 감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감이 더 강해지거나 훨씬 더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는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주장이다. 이는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가 한국인과 조선족간의 문화적 위계를 공고하게 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로 이미지화하고 한국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로 묘사함으로써 조선족에 대한 정서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이민자에 의한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한 이후 이민자에 의한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인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Robert Adelman 연구팀은 미국 이민자 범죄율은 1980년과 비교하여 늘어난 이민자수에 비해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곳이 더 많았고, 범죄율이 늘어난 도시도 이민자와 범죄와의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오히려 이민자가 지역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범죄율을 줄이는 것에 더 공

움직이는 서재, 2018, 371쪽.

12) 경찰청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1464&menuNo=200488>

13) 김종수, 「한국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4집, 2016, 195쪽.

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이유로 외국인의 추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안전을 이유로 공포를 통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sup>14)</sup>.

국내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더 크게 느끼고 수용성도 낮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2018년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52.8%로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보다 오히려 평균 1.14% 하락했다. 해외 연구나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외국인 범죄율과 불안감은 별 상관관계가 없음을 드러낸다. 범죄와 안전, 불안과 공포 어떤 수사를 동반하더라도 혐오는 타자의 다른 면모를 상상하는 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하나의 틀에 맞추어 개인을 집단에, 집단은 하나의 속성으로 표상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훼손<sup>15)</sup>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바로 혐오가 발생한다.

## 2. 무임승차론

외국인 혐오 담론의 두 번째 근거는 무임승차론이다. 청년실업, 불안전 고용,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경제불황으로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외국인에게 과도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난민대집회에서 피켓을 든 한 남성 참가자는 “난민에게 432,900원 지급, 의료, 취업, 주거, 교육까지 제공하는데 6.25 참전용사에게는 월 22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이 한 해 2천억 원이다<sup>16)</sup>. 그래서 나 같은 일반시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역차별을 받고

14) The Myth of the Criminal Immigrant, New York Times 2018, 출처: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3/30/upshot/crime-immigration-myth.html>,  
 (검색일 2019.5.15.)

15) 캐롤린 엠케, 앞의 책, 79쪽.

16) 2018년 지방자치단체의 이민, 다문화 관련 예산은 1천 771억 5천 600만 원이며  
 과정은 999개이다.(2018년 IOM 이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이민다문화 정책 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집회 주제도 “차별금지법 반대, 자국민 혐오 반대”였다.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외국인의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라는 기본적 권리 박탈로 확대됐다. 우리 부모들이 외국에서 시체 닦으면서 이룬 경제, 6.25 전쟁 때 총알받이로 죽어가면서 지킨 나라, 더 나아가 식민지 설움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일궈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함부로 놀러앉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분노로 이어졌다<sup>17)</sup>. 집회 참석자들이 주장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월 432,900원 보조금은 엄청난 금액 같지만 총 예산은 7억9260만 원으로 2018년 난민신청자 16,173명 중 고작 523명에게 3.5달간만 지원되는 액수이다<sup>18)</sup>.

난민반대집회의 발언들은 일본의 한국인혐오 단체인 ‘재일 코리안의 특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재특회)’의 주장과 거의 똑같다. 이들도 재일 코리안들의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재일 코리안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생활보호지원금을 반대<sup>19)</sup>하고 있다. “매년 3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목매어 자살하는데 외국 국적자인 재일 코리안의 70%가 우선적으로 생활보호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피와 눈물인 우리의 세금을 재일 코리안이 사용해도 좋습니까?” “정부는 일본인을 먼저 구해야죠, 외국인한테만 신경 쓰고 용납이 안 돼요<sup>20)</sup>”라며 외국인인 코리안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다. 이들은 점차

17) 난민반대집회 제3차 집회에 참가한 어느 여성의 발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9년 6월 19일 부산 중견·중소기업대표 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세금도 안내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외국인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외국인노동자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18) 2019년 법무부 난민관련 예산(난민인권센터), <<https://nancen.org/category/%EC%9E%90%EB%A3%8C%20Data%20on%20Refugees>, (2019.5.10.)

19) 2011년 12월 생활보조금을 받은 수급세대는 총 149만 7천 329세대이며, 이 중 재일 코리안은 1만 5천 세대로 연금수령 비율은 1.7% 정도이다. 재특회는 재일 코리안의 70%가 생활보호지원금을 수령하고 일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해 매년 3만 명이 생활고로 자살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재일조선인의 연금부당수령에서 비롯되었다고 공격하고 있다. 야스다 고이치, 『거리로 나온 넷우익』, 김현욱 옮김, 후마니타스, 2013, 199쪽.

20) 야스다 고이치, 앞의 책, 53쪽.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수도요금 면제, NHK 시청료 면제, 통근 정기권 할인, 공무원 우선채용<sup>21)</sup> 등 존재하지 않는 지원과 보조금의 명목 등을 조작했다. ‘보험료를 내지도 않는 코리안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재일 코리안을 기생층에 비교하거나 일본교원노조가 거둔 성금이 조선학교에 기부되었다며 모금사기, 일본인 역차별을 주장했다. 실제 재일 코리안의 생활보조지원금 지급비율은 일본인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는 차별받는 식민지 민중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웠고, 일본정부가 재일 코리안에게는 연금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이 된 후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다. 어떤 사실에 사실 아닌 것을 덧붙이거나 왜곡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선동은 혐오집단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재일 코리안의 70%가 생활보호지원금을 받으며 일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난민신청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은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주장은 일본의 험한세력과 그 기초가 일치한다.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이나 이민자 권리와 복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내국인 역차별 및 손해가 발생하고, 선주민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심양섭, 김지영)들도 무임승차론, 국민 역차별론에 힘을 실는다. 일반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다문화 혹은 사회통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 채 막연히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막대한 복지가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다<sup>22)</sup>는 우려도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취약 가족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한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은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를 축소하고 일반 취약 지원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sup>23)</sup>. 가족 구조가 온전하고

21) 야스다 고이치, 앞의 책, 199~210쪽.

22) 심양섭·김지영,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제8호, 2016, 17쪽.

23) 조혜영,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권 3호, 147쪽.

기능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한 부모 다문화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 역차별에 대한 분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반다문화 선동에 가깝고, 실제 지역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국민 역차별과는 차이가 있었다. 막대한 다문화 예산 중 한국인 고용창출을 위한 종사자의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으며, 시설 인프라 등의 비용으로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다문화 지원 액수만으로 국민 역차별론을 주장하는 무임승차론은 맥락을 무시한, 일본의 외국인혐오단체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

2019년 6월 19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발언을 하여 차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율을 19%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1.9%까지 포함한다면 매월 급여에서 20.9%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다<sup>24)</sup>. 더욱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외국인에게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사실상 같은 급여를 받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쟁점이 되는 외국인의 비과세 문제는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비OECD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관건이다.

물론 무임승차에 대한 갈등은 외국인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손 피켓을 들고 공개채용을 반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도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직화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하철 곳곳에 반대 포스터를 붙이

24) 국세청은 2018년 한 해 외국인 근로소득세로 7707억 원이 걷혔다고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면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오류이다. 외국인 당사자들은 한국인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아동 보육료와 같은 실질적 지원은 받을 수 없다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복지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한 공개채용을 부정한다고 비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공정하다고 믿는 것처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도와 전문성을 익힌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노동자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공정한 룰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여 분노하는 것처럼, 시민권 없는 사람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공정한 룰을 어긴 무임승차로 간주된다.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모순을 눈감아 버리고, 위계적 노동서열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더 하층에 배치된 계층을 무시하고 차별함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쟁과 불안, 집단적 우울을 극복해 가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3. 순혈주의, 민족정체성론

외국인을 혐오하는 세 번째 핵심 논거는 한국 고유의 순혈성, 민족적 동질성에 대항하는 이질적 타자로 인한 불안이다. 앤더슨은 민족주의를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민족은 특정한 시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 개념은 영속주의 관점에 가깝다. 민족은 운명공동체로 씨족이나 종족에서 출발하여 오랜 역사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존속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민족개념은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되면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 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영속주의적 민족주의는 통일 한국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와 세계화시대 다문화주의와 충돌할 가능성<sup>25)</sup>이 있다는 주장과 다문화주의로 인해 다양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민족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 교과과정을 통해 단일민족이란 동질성을 교육받고, 순혈주의를 자랑스러운 민족 정체성으로 인식해온 한국인에게 있어서 과도한 해석은 아니다.

25) 신평,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세계헌법연구』, 2008, 제14권 2호, 107~108쪽.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법은 동포에 대한 개념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살에 미국에 건너가 아시아계 최초 슈퍼볼 MVP 스타가 된 하인즈 워드 선수에 대한 열광도 한민족이란 우수한 혈통이 일궈낸 성공에 대한 자부심에서였다. 혈통에 근거한 민족 개념은 한국인을 형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같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가장 부정적인 기호와 상징이 부여되고, 강력한 혐오의 수사가 따른다. 국내 이주민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도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선족은 동포도 같은 민족도 아닌 우리 국민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조선족을 추방시켜 달라”, “차이나타운 없애라”, “조선족의 의료보험을 폐지하라”는 등의 조선족에 대한 혐오 청원이 1,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제7차 난민반대집회에서도 한 발언자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은 반란군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공동체의 적이자 공동체 내부에 숨어들어 온 위험한 타자임을 강조했다.

중국동포 혐오는 과거 10년간 우익보수주의자들이 형성한 국가주의의 결과물 중 하나라는 해석도 중국동포 혐오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보수는 왜 다문화주의를 선택했는가’라는 책의 저자 강미옥은 우익보수주의자들이 남북화해 통일을 지향하는 좌파를 무너트리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사회의 핵심 가치였던 민족 개념을 해체하고 대신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우익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구축된 다문화주의는 이질적인 타자들에 대해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소외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공화적 애국주의로 전환되었다<sup>26)</sup>는 것이다. 그 결과 한민족 대신 한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보수논객 신지호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유주의에 기초해서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를 버리고 세계주의와 국제주의를 주창할 경우 쟁점이 국가관, 애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애국이

26)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2010, 128쪽.

필요합니다. 민족주의 없는 애국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결별한 애국으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sup>27)</sup>.

‘민족을 넘어 세계로’란 슬로건을 통해 영웅적인 한국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다문화관련 스토리를 써 나갔고 우월한 한국인, 한국문화라는 국가주의가 한민족의 자리를 대체한 것이다. 그 결과 중국동포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이등시민으로서의 중국동포만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박노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원인을 고질적 인종주의에 상응하는 경제인종주의, 혹은 GDP 인종주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제본위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저개발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집단화하며 무시하고 배제하여 계층화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을 피부색에 따라 위계적인 계급구조로 관리한 인종주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sup>28)</sup>. 인종차별은 인종이라는 정태적 실체를 규명하기 보다는 인종화라는 지속적 과정을 통해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계급적인 다양한 고정관념들로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인종화는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적, 문화적 과정<sup>29)</sup>이며 그 속에 조선족이 위치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 III. 혐오의 생산

#### 1. 인종적 노동위계 ; 고용주에게 위임된 신체

1987년 한국은 민주화운동으로 분출된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된 한편, 산업구조 개편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기술집

---

27) 같은 책, 133쪽.

28) 박노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한겨레출판, 2016, 35~40쪽.

29)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제101권, 2018, 2쪽.

약적 산업의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 소위 3D 업종이라 일컫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해외로 이전할 수 없는 더 영세한 업체들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6개월간의 체류자격을 허가하는 대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모든 통제권한을 부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신체를 노동법의 보호아래 두지 않고 사업주의 자비심과 이기심에 위탁한 것이다. 이를 악용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루 14-16시간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했고, 안전장치가 없는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는 대신 외국인노동자에게 작동하게 했다. 이직을 희망하면 강제출국으로 엄포를 놓았다. 국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머무르게 할 권리와 추방할 권리를 위임 받은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의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하고, 고향친구들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이발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때도 한국인 감시자가 따라다녔다. 고용을 보증 받는 대가로 사업주의 처분에 모든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전적으로 한국인 사업주와 한국인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생명권을 보장받는 대신 모든 권한을 절대군주에게 위임한 흡스식의 사회계약론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국가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만 했다. 보다 공적인 틀 안에서 제도화되고 조직적인 일자리 위계 정책이 필요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있었던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제도를 바탕으로 급조한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든 노동과 삶을 사업주가 통제하게 했던 과거 착취 방식 그대로를 따랐다.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시 치료와 보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여전히 여권과 통장이 압류되었고, 외국인노동자는 권력자인 한국인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시간과 생산조건들을 감당해야 했다. 사고가 속출했고 야밤을 틈타 도주하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였다. 20세기 문명의 시대 자유로운 이동과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야반도주라니 가당하거나 한 말인가? 급기야 흑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 몸에 쇠시슬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농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생산관계 이외의 모든 삶까지 사업주나 혹은 그와 동류의식을 갖는 한국인에게 위탁되었으니 어떻게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산업연수제도는 1994년부터 악명을 떨치면서 유지되다가 2007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인권과 노동권을 향상시켰다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어 송출 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입국을 보증하였지만 노동자를 처우하는 방식은 산업연수제도의 원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기존의 권력구조는 그대로 승계되었다. 노동과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 아래서는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6,617명, 2018년 7,061명이 산업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고, 2017년 90명, 2018년에는 114명<sup>30)</sup>이 목숨을 잃었다. 근골격계 질병이라든지 유기화학 용제로 인한 만성 질병은 산업재해로 잘 인정되지 않았고,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작업장을 이동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현저하게 노동법을 어길 경우에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작업장을 이동할 수 있으니 로크의 저항권 정도는 보장된 계약이다.

농축수산 및 어업 부문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더욱 심한 예측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sup>31)</sup>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축수산 및 어업 등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농축수산 및 어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강제노동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어업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하고, 한낮 피약별에서는 그늘에서 쉬며, 농한기에는 한가로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이다. 이 법 조항 때문에 피약별에도 근무시간을 채워야 했던 베트남 노동자가 담배 밭에서 폭염으로 사망했고(2018년), 농한기에는 불법파견으로 사업주의 가사(家事)나 마을 잡일에 동원되는 등 가노(家奴)나 마을 노비로 전

30) 2019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이다.

3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어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 2013년 농업이주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밀양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다.

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 법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와 같이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시장에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아프고, 고단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약한 감정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sup>32)</sup>.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과로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네팔 노동자만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sup>33)</sup>.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목살 당했다.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참고 일을 하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밖에 없었다.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중국인이나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한다. 피부색이나 인종과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종의 우열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과 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한다면 과거 인종주의와 다를 바 없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탄생한 변종 인종주의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이래 자본과 국가는 노동시장을 서열화, 타자화, 인종화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을 못 없는 자, 권리 없는 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한동안 중국동포도 외국인노동자와 똑 같이 위계적인 노동시장의 하층계급을 담당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노동시장에 부여된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재외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와 농성을 반복<sup>34)</sup>했으며, 급기야 헌법소원을 통해 재외동포법의 ‘동포’지위를 획득했다. 과거 중국동포들은 한국인 사업주, 동료, 이웃의 감언이설에 속아 금품 사기를

32) 네팔 노동자의 자살 통계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위원장이 네팔인이었기 때문에 집계가 가능했다.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부적응과 자살에 대한 기록은 밝혀진 바 없다.

33) “이주노동자 자살 내모는 고용허가제 재검토해야”, (연합뉴스 2017.8.23.),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3128400052>>, (2019.5.3.)

34)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타국으로 이주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중국동포들은 차별적인 동포법에 항의하기 위해 명동성당 농성을 비롯하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04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동포법에도 차별적인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당하고, 노동현장에서 빈번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폭행의 피해를 당해도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지위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한국인 노동자와 유사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도 있게 되었으며, 제한 없는 중국왕래가 보장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여행사, 식당, 요양방문센터, 무역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 한국인들과의 경쟁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이 주도하는 중국동포교회나 센터에서 대상화되거나 동원화, 도구화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동포 경제인 모임, 중국동포 예술인 모임, 지역 봉사활동단체, 중국동포 NGO 등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서남권의 기초자치단체나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 등의 정부기관과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을 조직하여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13만 명의 중국동포들 중 약 10만 명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중국동포 정치세력화는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sup>35)</sup>.

재외동포로의 인정은 위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조선족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는 불만이 증폭되었고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는 노조에서마저 외국인 고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불안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체에 대한 불안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신체에 각인된 불법성, 예를 들어, 한국인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장 이동 같은 행위가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도 강제 출국시킬 수 있었던 억압과 통제 장치들이 중국동포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산과 관련된 것은 물론 삶 자체가 하층에 배치되도록 강제되었던 중국동포들이 한국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

35) 재한중국동포유권자 연맹은 조선족 국회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이 ‘동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로 발전시켰다. 1대 서울시당 위원장에 한마음협회 회장 김용선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이 행사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박영선 의원, 신경민 의원, 황희 의원이 참석했다. 중국동포 조직들은 적극적인 당 활동을 통해 시의회 및 국회로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로운 신체를 가진 존재로 발전했고, 생득적 약자성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저임금에 순응했던 중국동포들이 더 나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수시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팀을 구성해 공사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소모품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며, 생산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인과의 말다툼이나 주먹다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절대적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함께 맞붙어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 혹은 사업장을 옮기는 방법 등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종적으로 위계화된 노동시장의 하위 계층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중국동포가 점차 공론의 장에서 자기 발언,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자 분노와 저항이 폭발된 것이다. 경제적 경쟁관계에서 밀려난 한국인 비숙련노동자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고 혐오와 증오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인종적 하위 계층에 배치되었던 중국동포의 격상에 대한 분노는 난민과 함께 혐오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여전히 인종적 노동위계의 하위층위에 머물면서 한국인 고용주의 통제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 2. 인종적 가족위계 ; 가부장적 가족에게 위임된 신체

신자유주의 발전과 함께 서구 자본주의는 자유라는 보편적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그동안 매매되거나 상품화되지 않던 돌봄, 사랑, 친밀성 등 인간이 가진 비물질적인 부분을 상품으로 만들어 냈다<sup>36)</sup>. 빈곤, 실업,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아시아 여성들은 남자들 중심의 노동 이주에 좌절당하고 그동안 매매되거나 상품화되지 않았던 돌봄과 출산을 전제로 성을 상품으로 매매하는 국제결혼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은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개인들의 고유한 행위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결혼과 계약체결에 관한 모든 과정은 시장영역에 맡겨졌다. 국가의 최소한 개입이 인권 보호라는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이 적용됐다. 그

36)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 여성연구』, 2007, 46호, 145~148.

결과 중개업체들은 현수막 문구나 온라인 광고에 ‘베트남 처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초혼, 재혼, 장애인, 학력,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신부보증제’ 등을 명시하며 이주여성을 도망가지 않는 노예처럼 표상하고, 남성들에게는 건강이나 연령, 혼인지위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순결하고 젊고 순종적인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제결혼을 부추겼다<sup>37)</sup>. 남성의 혼인경력이나 직업,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의 신상정보는 부정확하게 전달되고, 한꺼번에 수십 명의 여성을 줄지어 세워 놓고 상품 고르듯 선택하게 하는 맞선 방식이나 여성들에게 처녀성 및 출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산부인과 검진 요구<sup>38)</sup> 등은 여성을 상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각인시켰다. 국제결혼에 드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는 배우자를 비싼 상품으로 인식하게 함으로 평등해야 할 가족관계를 왜곡시키고, 결혼중개업소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으로 자국민이 모이는 곳에 보내지 않기, 컴퓨터 배우지 못하게 하기, 아이 낳을 때까지 외출 금지하기, 여권 등 신분증을 당사자에게 주지 않기 등 반인권적 지침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주여성이 직업을 갖고 싶거나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망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다면, 한국 남성들은 국내에서 마땅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한국인 여성보다 편하게 느껴져서, 순진해서, 나이가 어려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아서, 그리고 호기심<sup>39)</sup> 등의 이유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 한국인 남성들의 성역할과 태도, 가족관련 가치관도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과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한국 남편의 가부장성을 더 강화시키고 불평등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고착시킨 것은 국적법의 간이귀화 요건이다. 간이귀화조항은 혼인 2년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로서 책임성과 결혼의 진정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는 2년은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순응하도록 훈련받는 기간으로 사용된다. 한국인

37)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저스티스』, 134-2, 2013, 308쪽.

38) 손영기,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 고찰」, 『인문과학연구』, 16권, 2011, 117쪽.

39)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6.

남편이 동행하여 결혼생활의 사실성을 증언해야만 외국인 아내의 비자가 연장되고, 국적취득 역시 한국인 남편의 신원보증과 동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2011년 12월 23일자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 서류가 없어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을 요구하고, 국적취득 및 체류와 관련 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혼인이 파탄 날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권을 보장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어를 못하고 사회적 연결망이 취약한 이주여성이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수용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는 재생산과 관련된 가족주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된다. 이렇듯 한국의 법과 시스템은 타자인 이주여성에게 있어서 형식적으로 작동할 때가 많았다.

결혼이주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가부장적 가족에 의한 통제와 규율화된 권력으로 인해 형성된 열등한 위계적 지위는 온갖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은폐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며 우애와 공존을 칭송하고, 한승수 국무총리의 주례로 100쌍의 부부가 합동결혼식을 하는가 하면, 다문화 축제는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부분의 수도권과 삼척, 영암, 무안, 양주, 창원 등 거의 모든 도시에서 열린다. 결혼이주여성은 마치 환영받으며 초대된 손님처럼 보인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해마다 다문화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프로그램도 촘촘히 짜여졌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선언은 그동안 사회적 주류였던 보수 세력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구성되었다<sup>40)</sup>. 전통을 중시하는 정통보수주의자들에게는 삼강오륜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우파민족주의자들에게는 우월한 한민족 혈통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어머니로,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동남아 및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미래의 산업역군으로 인식되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sup>41)</sup>.

40) 강미옥, 같은 책, 80~84쪽.

41) 강미옥, 같은 책, 117쪽.

보수정당의 지원에 힘입어 다문화 관련 사업과 연구들이 증가했고,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려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떠맡을 새로운 손님으로 추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 이주민의 요리나 의상, 민속춤이나 음악 같은 생활양식과 소비를 표현하는 가벼운 다문화주의를 고착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률이 높아졌고, 형식적이거나 동등한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가부장적 권력에 예속된 삶을 거부하는 여성들도 증가했다. 다문화 홍보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로 몽골 출신인 이라 씨가 경기도의원으로서 선출됐고, 2012년에는 필리핀 출신인 이자스민 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등 정치활동도 증가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상화된, 일방적 서비스를 거부하고 결혼 이주여성들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NGO 단체를 설립하여 한국인의 대의적 운동을 거부<sup>42)</sup>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 외 상담사, 통·번역사, 이중언어 교사, NGO 활동가로 일하는 이주여성이 크게 증가하고, 가족 외에 새로운 사회관계망을 확장해 나가며 자아실현을 펼치고 있다. 2019년 7월 26일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 서로 돕고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며 사회에 기여 하겠다는 설립취지를 밝히며 <결혼이주여성권리향상연대>를 발족했다<sup>43)</sup>.

42) 생각나무 BB센터는 2009년 10월 안순화 씨와 동료 몇몇이 설립했고 2010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B는 ‘이중언어-이중문화’를 뜻하는 영어(Bilingual-Bicultural) 머리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이주민 자녀들에게 우선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려는 목적에서 만들었다. BB센터를 만들 때는 안순화 씨 등 이주여성 3명과 중국 유학생 2명 등 5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회원 수는 19개국 약 900명에 이른다. 회원 구성은 결혼이주여성이 90%, 나머지 10%는 다문화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들이다. 또한 안순화 대표는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소통과 대화를 위해 2009년 5월 극단 ‘샐러드’를 창단했고 직접 이주여성들의 사연을 캐물어 가며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사람들> 안순화 생각나무 BB센터’, (연합뉴스 2013.11.27.), <<https://www.yna.co.kr/view/AKR20131127103700372>>, (2019.8.5.)

43) 2019년 7월 2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9개의 이주여성 단체 및 회원들이 모여 <결혼이주여성권리연대> 발족 및 ‘결혼이주여성 폭력의 원인과 대응 모색’이란 주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강화되면서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이 9.6%까지 증가했다. 그동안 순진하고, 시부모를 잘 봉양하고, 성적으로도 순종적이어야 했던 여성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7월 전남 영암에서 남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 여성이 이를 SNS에 올려 폭력의 실상을 폭로한 것도 더 이상 남편의 폭력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저항이었다. 이같이 남편이나 남편을 둘러싼 가족들의 폭력이나 가부장적 통제에 저항하고, 강요된 헌신에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가부장적 가족 구성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충돌은 가족 안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의원 1호로 의회에 진출한 이자스민 의원은 극우진영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비난을 받으며, 온갖 루머<sup>44)</sup>에 시달려야 했다. 정치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아니 한국인이 열망하는 지위를 획득한 비국민(외국계시민)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의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여성 보고서에 가정폭력(42.1%), 흉기로 위협(19.9%), 성행위 및 성적 수치심(68%), 폭언 및 심리적 학대(81.1%), 경제적 학대(33.3%)를 당했으며<sup>45)</sup> 남편의 폭력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까지 폭력현장에 남아 있었던 이주여성도 10년간 20명이 넘었다<sup>46)</sup>. 그것도 한 시민단체가 파악한 사망자 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폭력과 학대, 모욕과 죽음은 국가에 의해 위임된 가부장적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가 한국인 남편에게 위임한 시민권 보증수표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율적이며 구성적인 삶을 방해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종속적으로 만들며, 삶 전체를 예측의 상

---

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단체는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중국동포지원센터, 외국인주민네트워크, 주한베트남교민회, 글로벌한부모회, 생각나무BB센터,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주민방송국 MWTV이다.

44) 이자스민 의원은 학력 위조, 담배 절도 등의 거짓 루머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녀가 하는 발언이나 발의하는 법안마다 혐오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45)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고서』, 2018.

46)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까지 총 20명의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의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 혹은 그 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대로 몰아넣은 결과를 낳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 안에 인종적 위계를 구축한 것이다.

가족관계 안에 구축된 인종적 위계에 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저항하고 폭로하며 인정을 요구하자 다문화주의 실패론, 다문화 폐지론이 등장하며 국가주의와 함께 이주여성에 대한 혐오가 빠르게 싹트게 되었다.

### 3. 신고·단속·추방의 국가 억압 메커니즘

#### (가) 신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외국인 집단 전체에 대해 인종적 낙인화를 고착시킨 대표적인 제도는 신고·단속·추방 세 가지의 통제와 억압 시스템이다.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신고제도는 외국인을 전 국민의 감시 체제하에 배치함으로써 인종적 위계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특히 국민에게 비합법 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인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악용하여 지나가는 비합법 체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사례나, 중국동포 일가족이 번 돈 전부를 빌린 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건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한국 연인이 외국인 동거인을 신고한 사건 등은 신고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각인된 위계적 관계는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한국인 사업주나 한국인 동료, 한국인 이웃에게까지 일상적 감시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은 지난 난민집회의 구호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한국인이 결정한다. 당신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구호였다. 비합법 노동자를 머무르게 하거나 추방시킬 권리가 사업주에게 주어졌듯 이제 난민에 대해서도 머무르게 하거나 추방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의 개별적 신체에 국민의 권력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외국인력 정책기조의 영향이다.

한국이 1993년에 비준한 국제난민협약은 고통에 처한 타자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다. 만일 요청을 거부해서 타자가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추방해서

는 안 된다는 칸트의 정신이 난민협약의 기본정신이다. 난민수용 여부는 타자의 고통과 호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주체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8년 겨울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경인전철 승강장 전광판에는 약 10분에 한번씩 “불법체류 외국인 발견 즉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T 1588-7191)”라는 전광판 문구 안내 글이 송출되었다. 승강장에 있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이 문구를 본 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울 것 같다고 했다<sup>47)</sup>. 이러한 공공연한 신고 안내는 한국인에게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준다.

2016년 한 택시운전사가 남부터미널 근처에 아랍 계통의 외국인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테러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관할 강력계 형사팀, 경비과, 파출소 직원, 타격대가 투입된 해프닝<sup>48)</sup>은 아랍 계통의 사람이라는 인종적 낙인찍기의 결과였다. 근거는 하나였다. 아랍 계통의 외국인이라는 신고제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제도 차원에서도 작동되었다. 정부 부처 간 통보의무가 그것이다. 통보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말한다. 장기간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직원의 신고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고, 친구의 싸움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을 위해 통역을 도와준 참고인 몽골 고등학생도 경찰에 의해 외국인보호소로 이첩되었으며, 한국에 온 후 돈도 없고 배가 고파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에티오피아 사람도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었다. 후에 에티오피아인은 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 사기, 강도, 등 온갖 종류의 피해를 입고도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건 이런 통보의무 규정 때문이다. 그 어떤 인권침해나 피해보다 국

47) 벼랑으로 내몰리는 ‘미등록 외국인’ · (1) 외국인 혐오 부추기는 ‘전 방위 압박’, ‘불법체류자 신고’ 문구 뜨자... “주변 시선 싸늘하게 변해” (경인일보 2018.11.2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120010006571>>, (2019.8.5.)

48) 서울 남부터미널역서 테러의심 신고...경찰 출동 소동(연합뉴스, 2016.3.26.)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6025051004>,(2019.5.3.)

가가 제공하는 체류권이 더 큰 권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부처 간 통보 의무는 불법체류자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권리 없는 자의 원형이다. 비합법자의 체류권이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지위보다 상위에 배치되고 다른 모든 권리는 무용한 것으로 만든다. 법은 존재하지만 법 밖에 있는, 별거벗은 삶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통보의무는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의 원리보다 출입국 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의 인권 침해 시에는 통보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수 년 이후 경찰청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살인, 폭행, 협박, 학대, 감금, 유인 절도, 강간, 강제추행, 사기, 공갈, 성매매 알선, 성폭력, 교통사고, 직업안정법 피해자에 한해서는 통보의무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공권력의 냉혹한 처벌을 경험한 비합법 체류자들은 공적인 호소보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다. 일선 경찰관 역시 변화된 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 (나) 단속

비합법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에서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성이 높은 모든 국가에서 곤욕을 치르는 문제이다.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가 35만 5,126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중 태국인(13만 8,591명), 중국인(7만 1,070명), 베트남인(4만 2,056명)의 비율이 전체 미등록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만에 42%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비합법 체류자의 증가 원인과 입국관리 방식의 문제에 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비합법 체류자의 수를 전체 외국인의 10% 미만으로 조절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했다. 합동단속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종적 노동위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백 명의 경찰이 공장지대 외곽을 둘러싸고 일부는 건물 내부로 일부는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외국인들을 검거하는 소위 토끼몰이식 단속을 시행했으며, 거주지를 파악한 후 한밤중

에 침입해 연행하고 전기충격기<sup>49)</sup>를 쓰는 등 단속의 방법은 짐승을 몰거나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했다. 단속과정에서의 피해도 속출했다. 비합법 체류자의 강도 높은 저항과 위협에 찬 탈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때로 목숨마저 잃는 비극적인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sup>50)</sup>.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한 폭행, 10시간이 넘는 수감 착용,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빈번한 진정 내용들이다. 엄청난 비난에 의해 그물 총 사용은 폐지되었지만 단속의 방법은 여전히 야만적이다. 비합법 체류자의 강제추방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국의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존의 박탈일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유일한 수단에 대한 상실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한국/ 비한국 연인과의 영원한 이별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형성한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일하기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단속은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불심검문에는 인종적 낙인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2018년 7월 진주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친구가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대학원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몸을 제압한 채 승합차로 끌고 갔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민들이 무차별 폭행에 항의하자 “우리는 얼굴만 봐도 불법체류자인지 안다”라는 영상<sup>51)</sup>이 방송에 보도되었다.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부색과 외모만 보고 납치하듯 끌고 가 차량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풀어주고, 없으면 연행하는 방식은 단속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만 지금은 CCTV나 동영상이 촬영되면서 폭력적인 단속 과정이 유포되며 그 심각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49)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전기충격기 사용’ 논란’, (SBS 뉴스 2005.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2468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24686)>, (2019.5.1.)

50) 2018년 8월 미얀마 노동자 판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다가 8미터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친 뒤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단속으로 9명이 사망했고 77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51) ‘불법 체류자 단속한다더니...대낮 유학생 집단 폭행’, (KBS 뉴스 2018.7.31.), <<https://www.youtube.com/watch?v=MZxbwF0jtC4>>, (2019.6.5.)

단속은 기본권과 인권침해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국에서 일구어 온 삶 자체를 박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합법 체류자의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사업주를 압박함으로써 고용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비합법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비합법 체류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방책은 주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외국인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용허가제 계약종료 이후 잔류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sup>52)</sup> 미등록자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쿼터를 줄여 해당국가가 자국민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국인 고용주의 처벌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미미하다면 결코 비합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인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은 외국인 고용을 선호한다. 노무비 절감 효과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기능이 부족하지만 나이가 젊고 임금이 적어서 채산성 지수가 한국인에 비해 100 : 107.4로 높다<sup>53)</sup>고 한다. 하도급자가 저가 입찰했을 때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은 저임금 고용이다. 만일 고질적인 3-4차 하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노무비 하락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아무리 단속을 하거나 규제 장치를 갖춘다하더라도 비합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막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나서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임금덤핑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지한 채 단속으로 비합법 체류자의 삶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형사절차에는 억압적 인신구속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 원

52) 퇴직금 본국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 청산해야 하는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이나 지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53)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과제: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162권, 2015, 15쪽.

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사범인 비합법 체류자에게는 사법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단속을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기계처럼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듯 자국으로 쫓아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귀국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연계성을 확장시키고, ODA 사업과 연계하여 본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며, 지속적 기술협력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 성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연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주의 현상은 한국에서의 문제와 갈등, 효과와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주와 귀환의 선순환관계, 지구적 공생관계를 모색하며 풀어야 하는 것이 지구 공동체의 과제이다.

#### (다) 추방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은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추방이다. 비합법 체류자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숙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 당사자를 추방시키는 것이 훨씬 무리 없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방법이다.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늘 신속하게 추방시킴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합법 체류자의 인권침해를 인지했을 경우 가장 먼저 출국 정지를 명령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직원들의 폭언, 폭행, 장기간 보호/구금, 보호소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 집필권 보장, 화장실을 비추는 CCTV, 적정인원 수용, 징벌적 독거수용, 자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생활수칙 제공, 공휴일 면회, 운동시간 보장,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개선 사항들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개선된 내용은 거의 없다.

2007년 2월, 10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의 화재사건은 그동안 국가가 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외국인 보호소는 명칭 그대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종의 출국 대기 장소이다. 정산되지 못한 월급이나 전세 보증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국과도 자유롭게 연락을 취하여 귀국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자유롭게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며, 함께 보호된 가족이 있다면 자유로운 면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시설은 일반 재소자 구금 시설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유권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의 운영과 시설은 비합법 체류자가 행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성에 도전한 중범죄자임을 자각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3,4중으로 설치된 철문에 갇혀, 보호된 가족과도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보호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사람은 건물 끝 음습한 징벌방인 특별계호실로 보내진다.<sup>54)</sup> 밀린 임금이나 해결해야 할 금품문제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이다. 보호소에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구금생활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화재 발생 후에도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보다는 달아날 것을 염려해 잠긴 철문을 열지 않고 소화기로 대처하려 했다가 참사를 낳았다. 사람보다는 통제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고액의 채무 피해자, 산재로 인한 부상자, 난민신청자 등 인권 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 인신을 구속하는 법적 심사가 없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외국인보호소에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에 달했다<sup>55)</sup>.

보호소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 의미 없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법은 갇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법은 그냥 방치하다가, 지쳐 떨어져 한국 밖으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저 국민의 인종적 하층에 배치된 타자로만 다루고 있다.

54) 본 연구자는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7년 외국인보호소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55) 2019년 5월 16일 법무부 정보공개신청 결과, 2019년 5월 20일 기준 2개월 이상 보호된 외국인이 화성보호소 21명, 청주보호소 11명, 여수보호소에 8명이 있다.

#### IV. 마치며

예멘난민 입국 이후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가 유포되었다면 이제는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를 진실처럼 가장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혹은 SNS를 통해서 안전, 국민, 민족 정체성을 이유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항변한다. 어쩌면 난민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집회에 참석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 우선이라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수자의 억압을 목인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때 인류가 어떤 비극을 저지룰 수 있는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혐오는 감정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신념으로 확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가 점차 동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신념 체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에 근거하거나 진리에 주목하지도 않게 되고, 혐오 대상의 속성을 비난, 비판하고, 폄하, 공격하며 속성의 차이를 본질의 차이로 왜곡하고 차별과 공격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상호 공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관용과 몰이성이 자리 잡게 된다<sup>56)</sup>.

범죄 사회학자 브라이언 레빈도 혐오가 표현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직결 되고 있는지 혐오의 피라미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 조롱, 위협적, 모욕적, 폭력적 말과 행동의 (혐오 표현) →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 배제, 분리와 같은 (차별적 행동) →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 파손의 (증오 범죄) → 의도적 조직적 말살을 일으키는 (집단 학살)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말해준다<sup>57)</sup>.

외국인의 노동권과 자율권, 행복추구권이 한국인에게 예속될 수 있도록

56) 김용환,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학』, 제31호, 2019, 18-20쪽.

57) 홍성수, 『말이 같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2쪽 해설.

설계된 차별적 정책이나 공적인 공간에서도 조롱과 모욕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혐오 사다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국가의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와 만날 때 혐오는 건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며, 여기에 극우 정치인이나 언론이 가세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곧 몰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십상이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통일 한국의 미래와 이웃 공동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혐오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 ■ 참고문헌

- 강동관, 정영태, 박민정, 장주영, 『한국의 이주동향 2018』,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8.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2010.
- 강진구,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 콘텐츠 연구』, 2014, 17-37.
- 강철구, 「서양문명과 인종주의-이론적 접근」, 『서양사론』, 제70호, 2006, 8-42.
- 구기연, 「난민 이슈가 보여준 우리의 민낯」, 『논단』, 2018, 401-412.
- 그레그 이스터브룩, 김종수 옮김. 『비관이 만드는 공포, 낙관이 만드는 희망』, 움직이는 서재, 2018.
- 김동문, 「논쟁: 이슬람 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제67권, 2015, 358-384.
- 김서영,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제노포비아 경험에 대한 연구 :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연구』, vol 49(4), 2018, 32-63.
- 김영명,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콘텐츠 연구』, 17권, 2013, 3-37.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46(2), 2007, 129-157.
- 김용환, 「혐오와 관용의 관점에서 이방인(난민) 바라보기」, 『가톨릭철학』, 제31호, 2019, 19-35.
- 김재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종갑, 『혐오』, 은행나무, 2017.
- 김종수, 「한국영화에 나타난 조선족 재현 양상 연구」, 『비교문화연구』, 2016, 제44집, 191-209.
- 김지영, 「반다문화 논리의 확장과 공유: 19대 국회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분석」, 『한국사회학』, 51(3), 2017, 139-174.
- 김현미, 「난민 포비아와 한국 정치적 정동의 시간성」, 『황해문화』, 겨울호,

2018, 210-228.

- 김현희, 「외국인 범죄/테러리즘과 반다문화 정서의 글로벌화」,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1(1), 2016, 213-355.
-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 이해진 옮김, 『증오하는 입』, 오월의 봄, 2015.
- 박경태, 『인종주의』, 책세상, 2009.
- 박노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한겨레출판, 2016.
- 박 단, 「현대 프랑스 사회의 인종주의-민족전선의 이민정책과 신인종주의」, 『서양사론』, 제70호, 2006, 244-272.
- 박미화 · 김솔,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18, 93-116.
- 박종일 · 이태정 · 유승무 · 박수호 · 신종화, 「난민 발생과 국민국가의 대응」,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1호, 2013, 199-233.
- 손영기,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 현행 법제도 고찰」, 『인문과학연구』 16권, 2011, 109-131.
- 신 평, 「선진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헌법의 새 틀 모색」, 『세계헌법연구』, 제14권 2호, 2008, 103-126.
- 심규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및 과제: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162권, 2015, 1-25.
- 심양섭 · 김지영,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제8호, 2016, 1-31.
-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 옮김, 『거리로 나온 넷우익』, 후마니타스, 2013.
-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실험」, 『저스티스』, 134-2, 2013, 298-335.
- 엄한진, 「한국사회 인종주의 현상의 주요 양상과 특징」, 『비교한국학』, Vol.24 No2, 2016, 53-85.
- 여경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일감법학』, 제41호, 2018, 73-92.
- 이용승,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하는가」, 『민족연구』, 제72호, 2018, 166-183.
- 이종두 · 백미연, 「한국의 특수성과 다문화 정책」, 『국제관계연구』, 제11호,

2012.

임광순, 「국내 조선족 범죄의 실제와 방향성」, 『역사비평』, 제111호, 2015, 358-384.

제레미 워드론, 『혐오표현』, 홍성수, 이소영 옮김, 이후, 2017.

조르주 아감벤,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조혜영,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18, 135-159.

최기남 · 이성재, 「한국내 외국인 이주 및 체류자집단 인종문제의 폭동가능성에 관한 시론적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11호, 2006, 205-274.

캐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다산초당, 2016.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홍원표,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2007.

여성가족부,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15.

여성가족부, 『2018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5.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07.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국가 법령 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 2019.5.2.)

난민인권센터 [www.nancen.org](http://www.nancen.org) (검색일 2019.5.10.)

청와대 [www.president.go.kr](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19.5.1.)

<https://news.joins.com/article/19934292>>. (검색일 2019.5.1.)

<https://www.facebook.com/jiyeong.yunkim/timeline?>, (검색일 2019.5.1.)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85>> (검색일 2019.5.1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49000#cb](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449000#cb), (검색일 2019.5.10.)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1464&menuNo=200488>, (검색일 2019.5.2.)

<https://nancen.org/category/%EC%9E%90%EB%A3%8C%20Data%20on%20Refugees>, (검색일 2019.5.10.)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8/03/30/upshot/crime-immigration-myth.htm>, (검색일 2019.5.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120010006571>, (검색일 2019.8.5.)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3128400052>, (검색일 2019.5.3.)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6025051004>, (검색일 2019.5.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24686](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724686), (검색일 2019.5.1.)

<https://www.youtube.com/watch?v=MZxbwF0jtC4>, (검색일 2019.6.5.)

Ghanea, N. 「The concept of Racist Hate Speech and its Evolution over time」,  
『Paper presented at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s day of thematic discussion on Racist  
Hate-Speech 81<sup>st</sup> session, 28, August 2012, Geneva.

Tsesis, A. 『Destructive Messages; How Hate Speech Paves the Way for Harmful  
Social Movements』,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3.

Rumney, P. N. S, 「The British Experience of Racist Hate Speech Regulation;  
A Lesson for First Amendment Absolutists?」, Common Law World  
Review 117, 2003.

❖ ABSTRACT

## Who produces xenophobia?

– Foreigners placed in the lower levels of the racial hierarchy

Yang, Hae-woo  
Kyung Hee University

Since entering Yemen, open hate speech toward foreigners has ignited. Until now, xenophobia has spread through the Internet. However, abhorrent acts are now justified in the name of safety, people,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ism, or nationalism, by disguising distorted and fabricated information as truth. The targets of these abhorrent acts are also expanding substantially to include all foreigners, including ethnic Koreans in China, illegal immigrants, refuge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ate speech of this sort that attacks certain ethnic and national groups denies dignity and equality to others. In addition, it is a form of racism that justifies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attributes that minorities hav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hate speech has the effect of forcing silence on the minority and is a form of murder of the soul (Morooka Yasko 2015, 91-95) that causes the minority to stop objecting to the hate speech due to feeling self-ashamed and helpless. Xenophobic groups argue that they do not abhor foreigners, but instead care about our safety and protecting our community and our national identity. However, underneath the abhorrence is how the state has intentionally managed and controlled other people for a long time. The state should realize that racism and hatred have sprung up as a result of the nation's own role in oppression in reporting, cracking down, and deporting. This is a rudimentary study that reveals how xenophobia forms.

Key Words : Xenophobia, racism, refugees, Free Ride, national identity,  
Immigration, Crackdown, Multiculturalism, Chinese Korean,  
Foreign Detention Center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

